

## 외국어 학원 운영 회화과정 학습비 지원 사업 추진 관련 - 4 월 학 습 자 안 내 문 -

◇ 「제주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- 외국어 학원 운영 회화과정 학습비 지원」에 따른 4월 학습자 대상 학습비 지원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### □ 개 요

○ [학습대상자] 제1기 68명

○ [학습기간] 2024. 4. 1. ~ 4. 30.

○ [수강가능 학원]

-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(단,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「학원법 시행령」 [별표2]의 학원의 교습과정 중 ‘분야 - 국제화’, ‘계열 - 외국어 또는 실용 외국어’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설립·등록된 경우만 수강 가능)

\* 참고: 대국민서비스(학원서비스)에서 조회 가능(<https://hakwon.neis.go.kr/>)

- 학원에서 운영 하는 회화과정만 지원 가능 \* 자격증, 입시, 학교 교과과정 관련 학습은 지원 불가

○ [학원 수강 및 학습비 지급]

- (학습자) 수강학원 선정 및 진흥원으로 선정학원 가능여부 확인 ⇒ (진흥원) 학습자가 선정한 학원이 수강 가능 학원 여부 확인 및 학원이 「학교교과교습학원」일 경우 대상 학원에 안내 공문 시행\* ⇒ (학습자) 어학원에서 학습학습 시 출석부 서식 제출 후 출석부 작성·관리 요청 ⇒ (학습자) 관련 증빙 서식에 따라 학습비 신청 ⇒ (진흥원) 증빙자료 검토 후 비용 지급

### 《 \* 학교교과교습학원 안내 》

- 학교교과교습학원 안내 내용: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「학교교과교습학원」의 주된 교습대상이 유아 또는 초·중·고 학생인 경우에 최소한의 성인이 함께 어학 교육을 들을 수 있고, 성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교습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며, 이를 홍보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위배 됨

※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「평생직업교육학원」은 해당 없음

○ **[학습비 신청]** 2024. 5. 1(수). ~ 5. 7(화). 원본 제출

- 제출서류: 학습비 지원 신청서, 출석부, 학습비 결제 영수증(카드 영수증만 가능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, 만족도 설문지 <붙임 서식>
- 방문 또는 우편 제출: 제주도 서사로 43(삼도2동) 4층 미래인재육성부

○ **[학습비 지급]** 학습비 지급 신청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

- 학습자는 학원 수강 강좌의 70%이상 출석해야 학습비 지급 가능

□ **학습자 유의사항**

- 수강 가능 학원 여부 확인을 위해 **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반드시 전화 연락 및 확인 바람**
- 확인기간: 2024. 3. 26(화). ~ 3. 28(목).
- 연 락 처: 미래인재육성부 외국어 교육 담당 ☎ 064-726-9912
- 이 메 일: abc@jiles.or.kr

□ **기타사항**

- 5월 학습자 모집 안내
- 모집인원: 102명 \* 5월 ~ 6월에 한해 모집인원을 늘려 운영
- 모집공고: 2024. 4. 1(월). ~ 4. 12(금).
- 접수기간: 2024. 4. 8(월). ~ 4. 12(금).

- 붙임 1. 학습비 지원 신청서 서식 1부.  
2. 출석부 서식 1부.  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  
4. 만족도 설문지 1부. 끝.